



제 428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항의 조례 위임 >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9090호)

2025. 8.
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전문위원 김용규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항의 조례 위임	2

I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: 정부
2. 제 출 일: 2025. 3. 19.
3. 회 부 일: 2025. 3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,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항의 조례 위임

가. 개정안의 요지

- 개정안은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2항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장학사업) ① (생략)	제10조(장학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,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<u>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</u> 정한다.	② ----- ----- <u>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-----.
제11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(생략)	제11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-----.

다. 검토의견

○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거나 저소득층인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사업과 공적 및 은퇴 후 지병·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.¹⁾

- 그런데 현행법상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의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○ 법령에서 특정 사업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는데²⁾³⁾, 현행법상 학생선수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은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바⁴⁾,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

1) [참고자료1]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

2) < 법제처 2015. 4. 30. 회신 15-0168 해석례 >

(전략)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,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책무와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,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. (후략)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(사무배분의 기본원칙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·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,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4) 「체육인 복지법」 제10조(장학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한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에서도 사업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 등 병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⁾.
- 다만,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의 지원인원이 매년 1~2명에 불과한 등 지원 사업의 지속적·안정적 운영이 요구되는바, 지원 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와 관련된 사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, 개정안 문구를 “문화체육관광부령(안 제10조)/대통령령(안 제11조) ‘과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”

제11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질병,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5) < 대통령령 및 조례 등 병렬 위임 관련 유사 입법례 >

법률명	관련 규정
여객자동차법	제50조(재정 지원) ⑨ 국가 또는 시·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<u>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한부모가족법	제17조의6(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(産前)·분만·산후(産後)관리,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4. 11.>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</u> .
중소기업협동조합법	제42조(기능활성화체제)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, 시·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</u> .

등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음.⁶⁾

- 참고로, 개정안은 국정과제 ‘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’⁷⁾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핵심 사무⁸⁾인 ‘주민복지’와 ‘재산관리’ 사무에 대한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이며, 다수 유사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⁹⁾.

문 의 처

02)6788-5375

- 6) (수정의견) 1) ‘문화체육관광부령/대통령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’ 또는
2) ‘문화체육관광부령/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’

7) < 120대 국정과제 >

111.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

☐ 과제목표

-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,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

☐ 주요내용

- (자치권 강화)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·인사제도 개선, 계획수립권한 지방이양

8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9) [참고자료2] 제22대 국회 조례 위임 관련 유사 개정안 제출 현황

[참고자료1]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

원로 체육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 (자료: 문화체육관광부)

□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장학사업 추진 현황

1. 체육장학금

○ (지원 기준)

- (지원대상)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(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)
- (선정방식) 입상성적 등에 따라 추천순위 부여 후 대상자 추천(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→ 국민체육진흥공단) → 예산범위 내 장학생 확정(공단)

「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14조(장학사업 대상 등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,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○ (지원금액) 대학생 기준 최대 200만원 이내 등

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문화체육관광부훈령)」

제42조(장학사업 지원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인 경우

가. 초등학생: 30만원 이내

나. 중학생: 50만원 이내

다. 고등학생: 100만원 이내

라. 대학생(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): 150만원 이내

마. 대학생(학사학위과정): 200만원 이내

○ (연도별 예산 및 지원 인원)

구분	'22	'23	'24	'25
예산 (단위 : 백만 원)	332	330	317	330
인원 (단위 : 명)	400	555	528	555

2. 스포츠클럽 특기장려금

○ (지원 기준)

- (지원대상)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(체육인 복지법 제10조)
- (선정방식) 시·도 교육청을 통해 신청 명단 접수 후 소득기준(90점), 입상실적(10점), 가점 합산 상위자 순으로 선발

(※ 스포츠클럽 특기장려금 세부 선정기준)

○ (지원금액) 400만원 이내

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문화체육관광부훈령)」
제42조(장학사업 지원)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: 400만원 이내

○ (연도별 예산 및 지원 인원)

구분	'22	'23	'24	'25
예산 (단위 : 백만 원)	5,101	5,101	5,101	7,353
인원 (단위 : 명)	1,225	1,237	1,237	1,800

※ 스포츠클럽 특기장려금 세부 선정기준

1. 선발기준: 소득기준(90점), 입상실적(10점), 가점 합산 상위자순

○ 소득기준

구분	평가기준	내용		점수
1	기초생활수급가구	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급여 등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	-생계급여 대상자	90
			-의료급여 대상자	85
			-주거급여 대상자	80
			-교육급여 대상자	75
2	차상위계층	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장애·자활근로·본인 부담경감 등 발급대상	70	
3	한부모가족	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	65	

*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소득기준 점수로 부여함

○ 입상실적

구분	평가대회	등수	점수
1	- 동·하계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,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입상자 - 전·현직 국가대표 선수 및 국가대표 상비군 (유·청소년 국가대표 포함)	1등	10
		2등	9
		3등	8
2	- 전국규모대회 이상 입상자 * 지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인정불가 (체전 출전을 위한 선발전 등)	1등	6
		2등	4
		3등	2

* 입상실적 없을 시 점수 미부여(0점)

○ 가점

대상	내용	가점
장애인 종목 학생선수	-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학생선수	3

2. 동점자 처리기준

1순위	2순위	3순위	4순위
소득기준 고득점자	입상실적 고득점자	입상실적 다수 보유자	연소자 (생년월일 기준)

* 위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동순위로 선발하여 지원

□ 문화체육관광부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

○ (지원 기준)

- (지원대상) 국가 및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
(「체육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)

「체육인 복지법 시행령」

제16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원로 체육인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서 "지병,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질병,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
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, 대상자별 지급 금액·방법·시기,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· (의료비) 질병 부상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사람

· (생계비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

- (선정방식)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(※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)

○ (지원금액) 연 180일 이내 의료비(총 3천만원 이내) / 연 1천만원 이내 생계비

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문화체육관광부훈령)」

제44조(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

가.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

나.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.5배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3의 금액

2.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: 연 1,000만원 이내

○ (연도별 예산 및 지원 인원)

구분	'22	'23	'24	'25
예산 (단위 : 백만 원)	20	10	10	10
인원 (단위 : 명)	2	1	1	1

※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

(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(문화체육관광부훈령)」 [별표12])

구분		배점항목 및 기준		(비중) 점수구간	평가방법
평가항목	만점				
체육진흥의 공	20	상훈기록		(20%)	최고(最高) 상훈기록** 기준 점수책정
		A	정부 훈·포장, 체육상	20	
		B	체육회 체육상	17	
		C	기타 상훈	14	
소득 수준	30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의 종류 등		(30%)	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반 점수책정 * 조건부수급 제외
		A	생계급여	30	
		B	의료급여	26	
		C	주거급여	22	
		D	교육급여(또는 차상위계층)	18	
연간 의료비 수준	25	연간 의료비 수준		(25%)	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
		A	3천만원 초과	25	
		B	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	21	
		C	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	18	
		D	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14	
		E	5백만원 미만이나 불치병	10	
투병기간	25	투병기간		(25%)	의료기록 기준
		A	20년 이상	25	
		B	15년 이상 20년 미만	21	
		C	10년 이상 15년 미만	18	
		D	1년 이상 10년 미만	14	
합 계		100			

* 동점 시, ①소득(자산포함)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,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, ⑤주민등록상 고연령자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다.

**체육진흥의 공 상훈기록

- 가. 체육훈·포장 : 「상훈법」 시행령 증서양식 내 '체육활동을 통해 국위선양과 국가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'에 따른 훈·포장 사유 적시
- 나. 대한민국체육상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체육발전·연구·지도·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
- 다. 체육회 체육상 : 창의적이고 헌신적 노력으로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 선정·포상
- 라. 기타 상훈 : 수여사유가 지원 취지와 부합하고, 수여기관의 신뢰도(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경기단체 등)가 보장되는 경우 인정

[참고자료2] 제22대 국회 조례 위임 관련 유사 개정안 제출 현황

법률명 (의안번호)	주요내용(조항)	발의일	심사경과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2209096)	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(제16조제3항)	'25.3.19.	보건복지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(2209091)	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0조제1항)	'25.3.19.	보건복지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(2209089)	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7조의3제1항, 제2항)	'25.3.19.	환경노동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(2209092)	지방자치단체가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25조제3항)	'25.3.19.	보건복지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제2209121)	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1조제1항 및 제4항, 제14조제1항 및 제2항)	'25.3.19.	여성가족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2209118)	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4조제1항, 제2항)	'25.3.19.	여성가족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소금산업 진흥법 (2209142)	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·제조 시설 등을 설치·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,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·교육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·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(제14조제4항, 제15조제3항)	'25.3.19.	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(25.4.23. 전체회의 상정)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2209143)	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0조제4항)	'25.3.20.	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(‘25.4.23. 전체회의 상정)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(2209098)	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3조제1항, 제5항)	'25.3.19.	보건복지 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(2209114)	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의 농림·해양·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제25조제1항)	'25.3.19.	행정안전 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(2209115)	지방자치단체가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제27조제1항)	'25.3.19.	행정안전 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청소년복지 지원법 (2209119)	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(제18조의4제1항, 제4항)	'25.3.19.	여성가족 위원회 (전체회의 미상정)

*25.6.16. 기준